



보도 일시	2022. 9. 26.(월) 초간	배포 일시	2022. 9. 23.(금) 15:00
담당 부서 <총괄>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변제호 (02-2100-2830)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송현지 (02-2100-2832)

##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출범합니다. -새출발기금 출범 및 채무조정 신청 안내-

- ①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화)에 공식 출범합니다.
- ②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 가능합니다.
  -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시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초기에는 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③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을 운영합니다.
  - \*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10.4(화)부터 운영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은 9.27일과 9.29일에, 짝수인 분은 9.28일과 9.30일에 사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예) 1971년생(생년끝자리 홀수) ☞ 9.27 또는 9.29일
    - 1972년생(생년끝자리 짝수) ☞ 9.28 또는 9.30일
- ④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포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태가 예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채무조정 신청 자격

□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연체 3개월 이상 차주

(부실우려차주) 연체 3개월 미만 차주(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 〈채무조정 대상 차주(8.29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통해 기 발표)〉

- ①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②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
- ③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판단 기준(안)	
부실차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li> </ul>
부실우려차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li> <li>■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li> <li>■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li> <li>■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li> </ul> <p>*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p>

- ④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피해 증명서, 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문자 및 확인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등

## 2 채무조정 신청

-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 별첨 2)
-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을 운영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은 9.27(화) 오전 09:30에 오픈되며, 평일에만 운영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은 9.27일과 9.29일에, 짝수인 분은 9.28일과 9.30일에 사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예시) 1971년생(생년끝자리 홀수) ☞ 9.27 또는 9.29일  
1972년생(생년끝자리 짝수) ☞ 9.28 또는 9.30일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은 ①본인확인, ②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③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시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접속 전 준비 필요사항>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①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공동인증서
채무조정 ②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할 필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은 불필요) * 중소기업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③ 채무조정 신청	<b>(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b>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할 필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 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b>(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b>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창구 방문 상담을 통한 오프라인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이나 온라인신청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가능	

□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 현장창구 방문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시에는 현장창구에서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 등 전체 신청절차를 안내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오픈시점 및 운영시간>**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창구	콜센터
오픈시점	9.27(화) 09:30	10.4(화) 09:00	9.27(화) 09:0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평일 09:00~18:00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	새출발기금(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평일 09:00~18:00

※ 새출발기금 신청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별첨 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상 효과

#### 1)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

□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①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②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③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④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 2) 채무조정 내용

-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원금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을 적용	원금조정 없음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	연체기간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추후 확정) 적용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 3) 신용상 효과

-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됩니다.

○ 그러나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됩니다.

\* 상담 예약 후 2주 내에 상담이 이루어지며, 상담 종료시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부실차주는 채무종류(담보·보증·신용)에 관계없이 공공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채무조정 신청 한도·횟수 및 신청접수 기간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 동 조정한도는 개인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22.10.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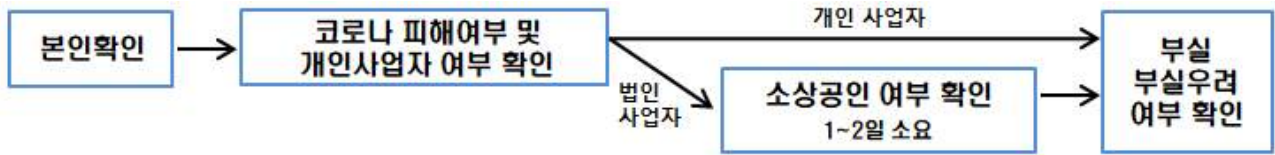
※ 새출발기금의 ①채무조정 대상 대출, ②채무조정 내용, ③신용상 효과, ④채무조정 신청 한도·횟수, ⑤신청접수 기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8.29일자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은 ①본인확인, ②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③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1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신한은행, 삼성패스 등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2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으로 접속하시면 본인확인 이후 채무조정 대상 차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 ①코로나피해 ②개인사업자 ③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일부 요건만 먼저 확인한 후 화면이 종료되나, 5-10분(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채무내역·연체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후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보내드린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플랫폼의 ‘진행상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②소상공인·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부 요건만 먼저 확인한 후 화면이 종료되나, 1-2일(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의 진위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확인시 소요되는 시간) 후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보내드린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플랫폼의 '진행상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대상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이 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절차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3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의 신청



- 채무조정 대상 차주로 확인이 되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미리 자금계획에 따라 생각해두신 희망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게 되며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이외 자산은 새출발기금에서 별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드리게 되며,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 채무조정안 송부시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며, 해당 메시지에 적힌 링크 또는 온라인 플랫폼의 '새출발기금 신청 결과'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약정과 관련된 사항은 카카오톡(또는 SMS)이나 전화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최대 2주 이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상담날짜를 예약\*(최대 2주 이내)한 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 \* 방문상담 날짜예약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상담은 최대 2주 내에 이루어지게 되며,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 채무조정 진행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채무조정 약정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와 우편 송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방문상담(오프라인신청)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는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도 이전부터 운영 중 →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안의 변경·무효 및 취약계층의 원금조정을

- 채무조정안이 송부된 이후, 채무조정 지원 대상 대출이 아닌 경우 당해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조정안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권역	사무소명	주소
서울	서울통합창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프양재타워 4층
경기 인천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5층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33
	평택지사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34, 평택삼성생명빌딩 1층
	의정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21, 신용보증기금 3층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2층
	춘천지사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원주지사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49, SKT빌딩 2층
대전 충청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캠프캐피탈타워 10층
	내포지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센트럴타워 3층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2층
	충주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부산 울산 경남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고촌빌딩 9층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176, 디딤빌딩 2층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20층
	진주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265, KT 상대빌딩 2층
	통영지사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297, 삼성온누리빌딩 6층
대구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5층
	안동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89, 세영빌딩 2층
	포항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9, 명선빌딩 2층
광주 전라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6층
	목포지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지하1층
	여수지사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57, 4층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3층
	군산지사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13, 상도빌딩 4층
제주	제주지사	제주도 제주시 은남길 8, 5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권역	센터명	주소
서울	중앙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관악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광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노원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 빌딩 3층
	양천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강남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5, 3층(라임타워)
경기 인천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15층
	계양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2층(삼환1빌딩)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성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수내동 6-5) 분당 예미지 빌딩 2층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안양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김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하남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하남고용복지+센터 4층
	구리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평택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신대동) 평택상공회의소 2층
강원	강릉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원주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춘천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속초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속초 고용복지+센터 3층
대전 충청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충남도청사 3층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대우증권빌딩 4층
	충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36, 충남빌딩 6층 301호
	당진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사상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삼성빌딩 3층
	울산	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2층
	진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센터 3층
	거제	경남 거제시 서문로5길 6, 거제고용복지+센터 3층
	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135, 5층 505호
대구 경북	대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8, 3층
	서대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경주	경북 경주시 동천동 원화로396,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포항	경북 포항시 중흥로 231, 동양빌딩 6층
	구미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광주 전라	광주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북광주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순천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 3층(금암동, 세광타워)
	군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2층
	목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제주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변제호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송현지 (02-2100-2832)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정명 (02-2100-1660)
		담당자	사무관	최승희 (02-2100-1661)
담당 부서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주식 (044-204-7520)
		담당자	서기관	김승택 (044-204-7521)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창운 (02-3145-8001)
		담당자	수석조사역	서기철 (02-3145-8300)
<공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자	실 장	민은미 (051-794-3030)
		담당자	팀 장	명재성 (02-3420-5690)
<공동>	신용회복위원회	책임자	본부장	민영안 (02-750-1021)
		담당자	부 장	최윤화 (02-750-1071)
<공동>	서민금융진흥원	책임자	부 장	심재철 (02-2128-8015)
		담당자	팀 장	이석희 (02-2128-8022)
<공동>	신용보증기금	책임자	부 장	곽영남 (053-430-4411)
		담당자	팀 장	권오정 (053-430-4412)
<공동>	기술보증기금	책임자	부 장	박문수 (051-606-7480)
		담당자	부부장	김희덕 (051-606-7490)
<공동>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책임자	부 장	하금두 (042-480-4285)
		담당자	차 장	권주희 (042-480-4286)
<공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책임자	실 장	윤수정 (042-363-7231)
		담당자	차 장	이재형 (042-363-7232)
<공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책임자	실 장	박미정 (055-751-9590)
		담당자	팀 장	김영재 (055-751-9601)
<공동>	한국신용정보원	책임자	부 장	조만식 (02-3705-5917)
		담당자	팀 장	이병철 (02-3705-5911)
<공동>	은행연합회	책임자	상 무	김평섭 (02-3705-5050)
		담당자	부 장	김경민 (02-3705-5704)
<공동>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부 장	최승진 (02-397-8670)
		담당자	차 장	이윤조 (02-397-8672)

<공동>	농협중앙회	책임자	팀 장	송광민 (02-2080-3121)
		담당자	계 장	우한울 (02-2080-3126)
<공동>	수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박현호 (02-2240-2200)
		담당자	팀 장	최영동 (02-2240-2210)
<공동>	신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민경대 (042-720-1341)
		담당자	팀 장	홍석진 (042-720-1355)
<공동>	산림조합중앙회	책임자	부 장	조현철 (02-3434-7230)
		담당자	팀 장	정미경 (02-3434-7235)
<공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책임자	부 장	장석남 (02-2145-9650)
		담당자	차 장	김한국 (02-2145-9654)
<공동>	여신금융협회(카드)	책임자	본부장	배종균 (02-2011-0602)
		담당자	부 장	조윤서 (02-2011-0740)
	여신금융협회(금융)	책임자	본부장	이태운 (02-2011-0710)
		담당자	부 장	백승범 (02-2011-0619)
<공동>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부 장	유제상 (02-2262-6624)
		담당자	팀 장	전선규 (02-2262-6530)
<공동>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부 장	최종수 (02-3702-8571)
		담당자	팀 장	이은직 (02-3702-8572)
<공동>	한국대부금융협회	책임자	부 장	심용식 (02-6710-0810)
		담당자	과 장	최정열 (02-6710-0816)
<공동>	서울보증보험	책임자	부 장	박종선 (02-3671-7231)
		담당자	차 장	이세은 (02-3671-7245)